

## 농업동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14.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함
  -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음
  -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음
    -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 가서명 추진 예정
    - \* 2005~2006 민간공동연구 → 2007~2010 산관학공동연구 → 2010~2012 정부간 사전협의 → 2012.5월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 14차례 공식 협상

### 한·중 FTA의 의의

-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中 소비자시장 규모(兆달러) : ('13) 4.7 → ('15) 5.7 → ('20) 9.9 (KIEP)
  - \*\* 中 총소비 증가(억 위안) : ('08)153,422 → ('13)292,166 (World bank)
-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음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98.3/92.5), 한-호주(90.7/98.4), 한-ASEAN(62.8/56.2), 한-중(70/40)

-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양허 제외율(수입액기준, %) : 한-미 FTA 0.9%, 한-EU FTA 0.2%, 한-캐 FTA 3.4%

-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음

-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셋째, 對中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 美·EU·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 : 칠레, 페루

-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됨
- \* 각국의 경제영토 : 칠레(85.1%),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

-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한중 FTA의 협정문 구성**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적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됨

**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끝에 타결**

- '09.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4.11.15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음
- 특히 금년중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
  - \* 공식협상: 제5차('14.2월), 제6차('14.3월), 제7차('14.6월), 제8차('14.8월), 제9차('14.10월)
  - \* 비공식 협상: 2회 ('14.4월, '14.9월)
- 9차 협상('14.10.15-17)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하여 11월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하였음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물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함
-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
- \*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

**<기체결 FTA 대비 농림수산물 양허 비교>**

|           | 한·뉴질랜드          | 한·미                       | 한·EU                      |
|-----------|-----------------|---------------------------|---------------------------|
| 양허제외 품목수  | 199개            | 16개                       | 44개                       |
| 조제분유      | 13년/15년+TRQ     | 10년+TRQ                   | 10년+TRQ                   |
| 천연꿀       | 양허제외            | 현행관세+TRQ                  | 현행관세+TRQ                  |
| 사과        | 양허제외            | 후자산 20년<br>(기타품종 10년)+ASG | 후자산 20년<br>(기타품종 10년)+ASG |
| 배         | 양허제외            | 동양배 20년<br>(기타품종 10년)     | 동양배 20년<br>(기타품종 10년)     |
| 호박(신선/냉장) | 계절관세<br>(5년/현행) | 즉시                        | 즉시                        |
| 오징어(냉동)   | 양허제외            | 10년(비선형)                  | 양허제외                      |
| 홍합(자숙)    | 현행관세+TRQ        | 3년                        | 7년                        |

‘농업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용·수록하였으며 본 협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